

서울특별시종로구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

2006. 7. 24.
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
시 민 행정 위원회

1. 審査經過

- 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06년 7월 13일 · 종로구청장 원안 제출
- 나. 회부일자 : 2006년 7월 14일 원안 회부
- 다. 상정일자 : 제165회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 임시회
제2차 시민행정위원회(2006. 7. 24) 상정 · 의결

2. 提案說明의 要旨 (제안설명자 : 행정관리국장 박 중 인)

가. 제안이유

2005. 12. 30 개정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70조제1항에서 규정한 지방재정운용상황의 공시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종로구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시행하려는 것임.

나. 주요골자

- 위원회 목적 변경 (안 제1조)
 - 지방재정법 제33조 및 동법 시행령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“서울특별시 종로구 재정계획·공시 심의위원회”로 한다.
- 위원회 기능 추가 (안 제2조)
 - 지방재정법 제60조 및 동법 시행령 제68조에 의한 재정공시 내용의 적정성과 공시 방법, 시기 등에 관한 사항 심의
 -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68조의 특수공시 선정 사항 심의
- 위원회 회의 (안 제5조)
 - 정기회의는 중기재정계획 수립 및 정기공시시 개최

3. 專門委員 檢討報告의 要旨

(보고자 : 전문위원 박 성 열) — 별첨 검토보고서 참조

4. 質疑 및 答辯 要旨 (생 략)

5. 討 論 要 旨 (없 음)

6. 修正案의 要旨 (없 음)

7. 審 査 結 果 : 원안가결

(종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함)